

의안번호	2208772
의 퇴 인	신영대의원
회 답 일	2025.4.25.
추계번호	25E13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소득공제 신설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혼인소득공제를 신설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3,860억원(연평균 △96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혼인소득공제 신설 (안 제52조)	-	-965	-965	-965	-965	-3,860	-965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 내용	비고
1	안 제52조 (혼인 소득공제)	○ 혼인소득공제 신설 - (개정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500만원 소득공제 ○ (참고) 혼인세액공제 운용 중 - (현행) 2024.1.1.~2026.12.31.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신고자 모두 가능	

Ⅲ. 비용추계의 전제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2조(혼인 소득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어, 부칙에 의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
 - 부칙에 따라, 동 법 시행 이후 혼인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에 따라 2026년 귀속분(2027년 신고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세의 2026년 귀속분에 대한 세수효과가 이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가 이루어지는 차년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
- 현재 결혼세액공제가 운용하고 있으나, 개정안 적용시 동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조정없이 근로소득자는 이를 동시에 받는 것으로 가정
 - 참고로 결혼세액공제는 2025년부터 운용 중이며, 2024.1.1.~2026.12.31.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신고자 모두 가능
- 혼인신고자 중 소득세 신고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성별·연령별 확정인구대비 근로소득세 신고자 비율을 따른다고 전제
 - 최근 5년(2020~2024) 평균 혼인건수가 향후 5년간 유지된다고 가정
-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23년 귀속 국세통계연보의 성별·연령별 자료를 따른다고 전제
- 본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하는 것을 담고 있으나, 본 비용추계서에서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거주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만을 추계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혼인소득공제 신청 인원 추정

□ (현황) 2023년 확정인구 5,177만명 중 근로소득세 신고자 약 2,085만 명으로, 전체 확정인구의 약 40.3%가 근로소득세를 신고함

- 성별·연령별 전체 확정인구 대비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비중을 활용하여 혼인신고자 중 근로소득세 신고인원을 추정

[표 2] 확정인구,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2023년 기준

	확정인구 (A) (명)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B) (명)	확정인구 대비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비중 (C=B/A) (%)
합계	51,774,521	20,846,828	40.3
남성	25,903,852	11,449,046	44.2
30세 미만	7,506,786	1,814,388	24.2
30세 이상	3,651,400	2,632,956	72.1
40세 이상	4,078,748	2,704,153	66.3
50세 이상	4,336,150	2,479,006	57.2
60세 이상	3,731,089	1,436,581	38.5
70세 이상	2,599,679	381,962	14.7
여성	25,870,669	9,397,782	36.3
30세 미만	6,906,572	1,870,822	27.1
30세 이상	3,240,377	1,986,696	61.3
40세 이상	3,898,918	2,049,992	52.6
50세 이상	4,299,385	2,079,476	48.4
60세 이상	3,883,397	1,166,731	30.0
70세 이상	3,642,020	244,065	6.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3.12.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 2024.12.

□ (혼인소득공제 신청 인원수 추정) 혼인신고자 추정치에 2023년 기준 성별·연령별 확정인구대비 근로소득세 신고자 비율 및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을 곱하여 추정

○ 최근 5년 평균 혼인건수가 향후 5년간 유지된다고 가정

[표 3] 혼인소득공제 신청인원 수 추정, 2023년 기준

(단위: 명, %)

	전체 혼인 건수 (20~24년 평균) (가)	혼인신고자 중 근로소득 신고인원 추정치 ¹⁾ (나)	근로소득 과세자 비중 (다)	혼인신고자 중 근로소득 과세인원 추정치 ¹⁾ (라=나×다)
남성	202,754	118,745	74.2	90,224
30세 미만	44,293	10,706	52.9	5,666
30세 이상	112,858	81,380	77.4	63,024
40세 이상	25,974	17,220	81.5	14,042
50세 이상	12,412	7,096	82.6	5,864
60세 이상	5,386	2,074	71.3	1,478
70세 이상	1,830	269	55.9	150
여성	202,754	94,062	58.2	56,447
30세 미만	74,972	20,308	49.0	9,947
30세 이상	94,931	58,203	63.2	36,776
40세 이상	17,917	9,420	64.0	6,029
50세 이상	10,217	4,941	62.5	3,086
60세 이상	3,741	1,124	52.2	587
70세 이상	977	65	33.5	22

주: 1) 근로소득 신고인원 추정치는 전체혼인건수(가)에 앞의 [표 2]의 C열을 곱해서 추정

나. 총 세수효과 추정

- (총 세수효과) 최근 3년 평균 성별·연령별 혼인건수를 바탕으로 근로 소득세 신고자수를 추정하고 면세자를 제외한 후, 이들 각각이 1인당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추계
- 1인당 소득공제액에 실효세율을 곱해 1인당 세수효과 산출한 후, 이에 성별·연령별 인원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 도출

[표 4] 혼인소득공제 신설(1인당 500만원 공제액)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2023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혼인신고자 중 근로소득 과세인원 추정치 (A)	1인당 혼인 소득공제액 (B)	과세표준 대비 산출세액 비율 ¹⁾ (C)	1인당 세수감소 효과 (D=B×C)	총 세수감소효과 (E=A×D)
합계	146,671	5	15.2%	0.76	96,498
남성	90,224	5	16.3%	0.82	63,257
30세 미만	5,666	5	10.1%	0.51	2,862
30세 이상	63,024	5	13.3%	0.67	41,964
40세 이상	14,042	5	16.4%	0.82	11,550
50세 이상	5,864	5	18.4%	0.92	5,387
60세 이상	1,478	5	18.1%	0.90	1,337
70세 이상	150	5	20.9%	1.05	157
여성	56,447	5	12.4%	0.62	33,241
30세 미만	9,947	5	9.3%	0.46	4,625
30세 이상	36,776	5	12.0%	0.60	22,129
40세 이상	6,029	5	13.6%	0.68	4,114
50세 이상	3,086	5	13.1%	0.65	2,021
60세 이상	587	5	11.5%	0.57	337
70세 이상	22	5	13.1%	0.65	14

주: 1) 면세자 제외

4. 세수효과 요약

- (귀속기준) 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혼인소득공제 신설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4,825억원(연평균 △96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소득 발생연도 기준, 귀속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합계	-965	-965	-965	-965	-965	-4,825	-965

- (징수 기준) 근로소득세 징수시점을 반영할 경우 소득세는 2026~2030년 동안 총 3,860억원(연평균 △96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근로소득세의 2026년 귀속분에 대한 세수효과가 이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가 이루어지는 차년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징수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합계	-	-965	-965	-965	-965	-3,860	-965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